

경운대학교 교원창업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원의 창업과 임원의 취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창업: 교원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성과를 활용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가 정하고 있는 벤처기업을 교내·외에서 창업하는 것을 말한다.
2. 겸직 : 교원이 창업과 관련하여 교원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을 겸하는 것을 말한다.
3. 휴직 : 교원이 창업기업의 대표 또는 임원으로 활동하고자 한시적으로 교수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대학지원분”이라 함은 창업 및 운영에 투입될 대학의 시설, 비품, 연구기자재, 지식재산권 등을 말한다. <개정 2020.09.01.>
5. 실험실창업 : 교원이 본 대학교의 실험실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본 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을 활용하여 개발한 연구 성과를 사업화함을 말한다.
6. 실험실공장 : 본 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 안에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28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제2조1(기본원칙) 교원의 창업 및 창업관련활동(이하 “창업 등”으로 한다)은 대학의 고유기능인 교육과 연구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심의기관) 교원 창업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4조(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교원창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창업 관련 정책수립
2. 교원의 창업활동의 승인여부 심사 및 평가
3. 창업기간의 조정·연장에 관한 심사
4. 창업승인의 취소에 관한 사항
5. 창업교원 및 창업회사의 기부에 관한 사항
6. 기타 교원의 창업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5조(창업절차) ① 창업승인을 받고자 하는 교원은 소속 학부(과)장의 추천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원창업 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다음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자료 1부

- 가. 창업교원의 이력사항
- 나. 창업동기 및 회사 개요
- 다. 기술 또는 연구개발계획과 일정
- 라. 시장성 및 사업효과
- 마. 소요자금 및 자금조달 계획
- 바. 사업 참여자의 역할과 인적사항
- 사. 대학에 대한 재정 기여계획
- 아. 수업 및 학생지도 대책

- 3. 실험실 공장 설치 승인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해당자에 한함)
- ② 산학협력단은 교원의 창업신청서가 제출되면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 한 후,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 뒤 해당교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9. 01>

제6조(창업회사의 설립 및 형태) ① 창업승인을 받은 교원은 창업 준비기간으로 승인된 기간을 제외한 창업활동 후 3개월 이내에 회사를 설립하여야 한다.

- ② 교원이 창업하거나 임원에게 취임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식회사이어야 하며, 창업 교원은 지배주주로서 회사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

제7조(겸직 및 휴직) ① 이 규정에 의하여 기업을 창업 또는 임·직원의 활동으로 겸직 및 휴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총장은 겸직 또는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겸직기간은 1회당 3년을 원칙으로 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③ 휴직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최대 지배주주로 창업을 하여 창업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2년으로 할 수 있으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 1년단위로 연장할 수 있고 무급으로 한다.
- ④ 창업 준비기간이 필요하지 않는 휴직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고 무급으로 한다.

제8조(창업승인의 취소) ① 총장은 창업기업이 창업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1. 창업활동이 교육과 연구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경우
- 2. 창업교원 등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3. 사전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 4. 창업성도가 미미하고 창업의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 5. 본 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6. 소속 학생을 기업 활동에 부당하게 활용한 경우
- 7. 기타 총장이 승인된 사항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② 창업승인이 취소된 교원은 취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창업과 관련한 일체의 활동을

중지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20.09.01.>

제9조(창업지원) ① 이 규정에 의해 창업을 하는 교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1. 실험실공장 설치
2. 연구실 사용
3. 창업보육센터 입주
4. 자금지원 알선
5. 대학 및 산학협력단 보유기술에 대한 사용
6. 기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창업교원의 기여사항) ① 창업허가를 받은 교원과 우리 대학에서 연구개발 또는 시설투자 와 관련하여 재정지원을 한 경우에는 상호협약에 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재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

②1 항의 기부금액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11조(창업 및 신고) ① 총장으로부터 창업을 승인 받은 교원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등을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한다.

② 제3자의 창업에 임원으로 참여하는 교원은 취임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취임회사 등기부등본 1부.
2. 재직증명서 1부.

제12조(사무관장) 이 규정의 교원창업과 관련된 업무는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관장한다.

제13조(기타 세부사항) 이 규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1(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 대학교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시행일 이전에 창업하였거나 그 임원으로 취임한 교원은 이 규정에 따라 창업 또는 취임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9.0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겸직허가 신청서

신청인	대학	직위		성명	
전공분야		본교 임용일		연락처	연구실: 휴대전화:
회사명				홈페이지	
회사주소				전화	
겸직예정 직책, 역할	직책			주된역할	
기술 또는 연구개발분야					
허가신청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년 개월)				
대학지원 요청사항					
재정기여 방법					

『교원창업에 관한규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 임원 겸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①

- 붙임 : 1. 벤처기업확인서
 2. 벤처기업평가서
 3. 사업계획서 1부(아래의 내용을 포함, 구체적으로 기술)
 가. 창업동기 및 회사개요
 나. 기술 또는 연구개발 계획과 일정
 다. 시장성 및 사업효과
 라. 소요자금 및 자금의 조달계획
 마. 사업 참여자의 구성 및 역할과 인적사항
 바. 대학에 대한 재정기여 계획
 사. 수업대책 및 학생지도
 4. 실험실 및 실험기자재 사용승인 신청서 1부(해당자에 한함)
 5. 실험실 공장 설치 승인 신청서 1부(해당자에 한함)

위 사람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기업 임원취임을 추천합니다.

학과장(학부장)_____ (인)

학 장_____ (인)

[별지 제2호 서식]

실험실 및 실험 기자재 사용승인 신청서

담 당	학과(부장)	학 장	처 장	부 총 장	총 장

신 청 인	대학	직 위	성 명
사용 실험실 명			
사용 기자재 명			
학생 교육, 실습 지장 여부			

※ 작성란 부족 시는 별지 붙임으로 작성할 것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별지 제4호 서식]

협 약 서

경운대학교 총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_____(이하 “을”이라 한다)는 경운대학교 교원창업에 관한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겸직허가와 의무이행) “갑”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을”의 벤처기업 임원() 겸직을 허가하며, “을”은 경운대학교 『교원창업에 관한 규정』 및 이 협약에 따른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2조 (보상) ① “을”은 벤처기업 임원 겸직허가에 대한 재정적 기여를 위해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갑”에게 보상한다.

매출총액의 _____%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_____%

② “갑”은 “을”에게 필요에 따라 주식발행 또는 매출총액을 입증하는 관련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보상의 기간과 시기는 _____로 한다.

제3조(시설 및 장비, 기자재의 이용) ① “갑”은 “을”의 창업 지원을 위해 다음의 시설물의 이용을 허가한다.

○○관 ○○○호, m²

② “갑”은 “을”의 요구에 따라 전항의 시설물 이외에 기자재 및 기타 설비 등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시설이용료) ①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월간 이용료는 1m²당 _____원으로 한다.

②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는 “갑”과 “을”이 상호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따로 정한다.

③ 전항의 이용료 납부시기는 6개월 단위로 한다.

제5조(공과금의 부담)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이용에 따른 수도료, 전기료를 포함한 각종 공과금은 “갑”의 청구에 의해 “을”이 부담한다.

② “갑”은 위 공과금을 선납하고 이를 “을”에게 사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권리의 양도, 전대 등의 금지) “을”은 제3자에게 시설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시설 등을 전대할 수 없다.

제7조(“을”의 의무) ① “을”은 허가 시설물의 이용기간 동안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시설물 및 부대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갖는다.

② “을”은 학교의 시설, 장비 및 기자재 등을 이용함에 있어 청결유지와 화재 및 도단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인화물 또는 폭발위험이 있는 물품의 반입 제한, 출입의 관리 등에 있어 관련 부서 담당자의 통제와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목적물의 구조변경 등) ① “을”은 본 시설물을 본래 목적 외에 이용할 수 없으며 “갑”의 사

전허가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1. 시설물의 구조변경
- 2. 시설물 부착물의 철거 및 훼손 등의 행위
- ② 협약기간의 만료 또는 협약해지로 인하여 협약이 종료되면 “을”은 대학이 제공한 시설물을 “갑”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원상복구) “을”은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신속히 원상회복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해지) “을”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지체하거나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또는 시설이용료나 공과금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기간 중일지라도 “갑”은 중도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위약배상) 제 10조의 규정에 의해 협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을”은 위약배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본 협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통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호협의를 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구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3조(협약기간) 제3조의 시설물 및 기타 설비 등의 이용기간은 검직 허가기간으로 하며 검직 허가 기간의 연장 또는 해지에 따라 자동으로 연장 또는 해지된다.

제 14조(특약사항) _____.

본 협약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경운대학교총장 (인)

“을” _____(인)